

## ■ 해외 동향 ■

**미 법무부 · 연방거래위원회, 수직적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안 발표**

1. 시장획정에 고려하는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2010년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에서 제품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가상독점테스트(hypothetical monopolist test)' 및 'SSNIP 테스트'가 수직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가상독점테스트'는 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가상의 독점기업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켰을 경우 수익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SSNIP 테스트는 그러한 독점기업이 가격을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게 상승(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시켰을 경우를 고려하는 테스트입니다. 지리적 시장을 획정할 때는, '공급자 위치' 및 '고객 위치'를 추가로 고려하고, 시장참여자 · 시장점유율 · 시장집중도를 판단할 때는 '관련 제품(related products)의 경쟁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항(safe harbor)'에 해당하는 '20% 조항'(20% threshold)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수직적 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이고, 관련 상품의 사용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법무부와 FTC는 해당 결합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기준으로 '민감한 사업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최근 FTC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FTC는 2019년 1월 사무용품 도매업체인 Staples의 Essendant 인수 사건에서 동의명령(consent decree)을 내렸는데 당시 Rohit Chopra 위원과 Rebecca Slaughter 위원이 기업인수를 통해 민감한 사업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FTC 내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어 변경 없이 그대로 채택이 될지는 두고 봐야합니다. FTC 의원 중 일부는 본 개정안이 과거 심사지침을 대체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권의사를 표했습니다. 곧 본격적인 공개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미칠 영향도 귀추가 주목됩니다.